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 강화를 위하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되,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에 두었던 한시정원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에 관한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2명(4급 1명, 연구관 1명)은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가유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7. 2. ~ 7.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항

15의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5의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총괄·조정

제13장(제45조)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343”을 “345”로 하고, 일반직 계 “342”를 “34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9”를 “331”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유산청 소속의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를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문화유산국) ①·② (생략)	제10조(문화유산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u><신설></u>	15의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항
<u><신설></u>	15의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u><신설></u>	15의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총괄·조정
16. ~ 18. (생략)	16. ~ 18. (현행과 같음)
<u>제13장 한시조직</u>	<u><삭제></u>
<u>제4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추진단) ① 국가유산청 문</u>	<u><삭제></u>

화유산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8월 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을 둔다.

②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총괄·조정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관련 기초 조사·연구
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대외협력
5.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
6.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7.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관련 각종 기술지도

및 현장 점검

8.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발표회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국가유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43</u>	<u>345</u>	+2
·	·	·	
·	·	·	
일반직 계	<u>342</u>	<u>344</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29</u>	<u>331</u>	+2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6